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안도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833

발의연월일: 2024. 6. 24.

발 의 자: 안도걸·강준현·최기상

정성호 · 황명선 · 진성준

임호선 · 신영대 · 김영환

임광현 · 위성곤 · 김태년

박홍근 • 맹성규 • 정준호

유호중 • 이기헌 • 박희승

의원(18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소상공인인 임차인에게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임대료 인하액의 70%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나, 해당 특례는 2024년 말로 종료될예정임.

그런데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의 장기화로 인한 내수부진으로 자영 업자의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폐업과 대출이 증가하고 있어 소상공인 의 경제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액공제 특례를 상시화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일몰기한을 삭제하여 민간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를 촉진하고 자영업자의 임대료

부담 경감을 유도하려는 것임(안 제96조의3 제1항 및 제2항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6조의3제1항 중 "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(이하이 조에서 "공제기간"이라 한다) 인하하여"를 "2020년 1월 1일부터 인하하여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공제기간을 포함하는 계약기간"을 "계약기간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혂 행 개 아 정 제96조의3(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제96조의3(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)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)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 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(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에 한 정한다)으로부터 2020년 1월 1 -----2020년 1월 1 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일부터 인하하여-----(이하 이 조에서 "공제기간"이 라 한다)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 대료 인하액의 100분의 70(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의 기준 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)에 해당 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 세에서 공제한다. ② 공제기간을 포함하는 계약 ② 계약기간-----기간 중 일정한 기간 내에 임 대료 또는 보증금을 인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

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1항에	
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	
거나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	
징한다.	
③ ~ ④ (생 략)	③ ~ ④ (현행과 같음)